

환 · 경 · 관 · 련 · 질 · 의 · 응 · 답

COMMON 굴뚝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

Q

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설치될 예정인 132 TPH 용 일반보일러가 기존에 이미 가동중인 타보일러의 굴뚝에 COMMON으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. 이경우 총 배출 용량은 282 TPH 입니다.

대기환경보전법 별표8 배출허용기준상에 입자상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보일러 150 TPH 이상인 시설의 경우 20(4) mg/Nm³이고 150 TPH 이하인 시설의 경우 30(4) mg/Nm³으로 되어 있습니다.

설치시설의 해석에 있어 1개의 굴뚝에 2개의 시설이 연결되어 운전된다 하더라도 각 시설에 대한 용량을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.

즉, 132 TPH에 대한 30(4) mg/Nm³을 기준으로 설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.

본 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.

A

일반보일러의 먼지항목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.

1개의 배출구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될 경우 각각의 배출허용기준 중 가장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, 참고로 배출허용기준 중 먼지의 단위는 mg/Sm³(표준상태 : 0℃, 1기압)임을 알려드립니다.

실험실 폐용제

Q

실험실에서 발생하는 비 할로겐 폐용제와 용제용기에 대해 처리 방법을 알고자 문의합니다.

실험실 발생 폐유기용제는 N-헥산이며 그용기 도한 처리 하고자 합니다. 회사에서 거래하는 수거업체에서는 유기용제를 분석후 에 계약을 맺어 처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. 기존의 재활용 거래업체에서도 헥산 수거에 난색을 표해 소각처리하고자 합니다. 용제를 위탁하고 자 할때 어떤 분석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 추가로 용제용기 역시 폐유기 용제와 같은 분류의 폐기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

A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2조의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함유 여부에 대하여 분석한 후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, 유기용제가 모두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용기는 일반폐기물에 해당됩니다.

건설폐기물 보관

Q

당 공사현장은 매년 건설 폐기물(폐콘크리트, 폐아스콘)이 조금씩 발생하는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.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 임목폐기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

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, 현재 폐아스콘 및 임목폐기물을 현장내 야적 보관중입니다.

질의1) 건설폐기물(폐콘크리트, 폐아스콘) 및 임목폐기물을 공사현장내에 야적,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?

매년 폐기물은 발생하는데 그 양이 적어 1,2년 현장에 보관했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 한꺼번에 위탁처리하려고 하는데 장기간 현장내에 보관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.

A

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으며,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. 아울러,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공사완료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, 기타 보관일수 및 보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『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우수(빗물)배수로 침전물 처리관련

Q

공장내에 우수(빗물)이 흐르는 우수배수구가 있습니다.

폐수는 우수배수로와는 별도의 폐수관로를 통해 집수되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.

강우시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우수배수로에 침전된 침전물을 진공차로 흡입하여 제거하고자 합니다. 이 때 우수배수로의 우수(빗물)이 침전물과 함께 흡입됩니다.

질의1) 상기의 경우 진공차로 흡입된 침전물과 우수가 섞인 물(고형물 15% 미만)은 폐수에 해당되므로 공장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지요?

질의2) 아니면, 우수(빗물)에 해당되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면 희석처리가 되므로 별도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지요. 별도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된다면 처리시설은 방지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

A

우수배수로에 침전물이 포함된 더러워진 수질오염물질은 폐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우수배수로의 침전물 등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희석처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성상 및 오염농도 등에 따라서 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처리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에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, 유류 등의 누출·유출을 금지하므로 이들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방류가 가능할 것입니다. 또한 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 ㉔